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이전 종사자 지원(안 제13조)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설 이전시 함께 이주해 오는 종사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나.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17조)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 확보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설치·이전과 기존 종사자의 이주 또는 신규채용 관련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인구 산정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 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 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 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 원)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 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u>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 부 지원</u>	2. ----- ----- ----- <u>설치·이전과 기존 종사자의 이주 또는 신규채용 관련 비 용의 일부 지원</u>
<u><신 설></u>	<u>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 정안전부장관은 생활인구 산정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 의 확대 지원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448